

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8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5. 10. 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성남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청소년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성남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)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 공간 제공하는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,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성남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
-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위탁 대상시설 현황 및 위탁기간

- 위 치: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

○ 규 모: 421.23m²(지상 4층)

○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

○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·결정

사. 2025년 소요예산: 454,026천 원(국 100,783, 시 53,023, 구 300,220)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| 검 토 항 목 | 검 토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6조,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」제6조에서 청소년단체(법인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○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가능하고, 재원조달의 다양화(후원금, 공모사업 선정 등)로 민간위탁이 적절 |
|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|
| 3. 경제적 효율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|
|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위탁 시 수행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○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·관리 가능 |
|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년마다 실시 성과 측정 가능 ○ 보조금 정산·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 |
|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법령 및 위탁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|
|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 대상은 소득수준과 무관,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|

☞ **종합의견:**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(법인)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

3. 추진일정

○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: 10~11월

○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: 11월

○ 위·수탁 계약 체결: 12월

4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규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①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 계약의 기간·조건·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청소년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청소년센터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성남청소년센터 현황

○ 시설개요

- 소재지: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
- 규모: 연면적 421.23m²(지상4층), 부지 : 126m²
 - 1층: 플레이실(보드게임, 도서), 사무실
 - 2층: 멀티실(닌텐도, PC 등), 노래연습실, 댄스연습실
 - 3층: 다목적실
 - 4층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교실(2)

○ 세부내용

- 위탁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운영주체: 울산흥사단(대표 박길순)
- 2025년 예산: 454,026천원(국 100,783 시 53,023 구 300,220)
- 종사자: 6명(센터장 1, 팀원 1, 배치지도사 1, 방과후아카데미 전담 3)
- 주요업무
 -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
 -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(저소득층 중학교 1·2학년 40명)
 -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
 - 기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

○ 위치도

